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수처 처·차장 및 수사처검사의 경력요건 완화〉

■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37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 주요내용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9. 10.
3. 회 부 일: 2024.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처장을 임명함에 있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하고 있으며, 차장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함. 나아가 수사처검사의 경우에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함.

공수처의 처장은 차관급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인사인 검찰총장과 동일한 수준의 법조경력이 요구되며, 같은 차관급 인사인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10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마찬가지로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 역시 타 수사기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인하여 높은 진입장벽이 세워짐에 따라 공수처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공수처 1기는 6개월간 차장 자리가 공석이었으며, 수사 실무진의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주요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인재를 확보하며, 나아가 수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차장의 자격요건으로 판사·검사·변호사 등 제5조 각 호의 직에 각 15년 또는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규정¹⁾함. 또한,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으로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규정함.

개정안은 처·차장 및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을 10년(처장), 7년(차장), 3년(수사처검사)으로 각각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 제8조).

현행	개정안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u>15년</u>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① - ----- <u>10년</u> ----- ----- ----- ----- -----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제7조(차장) ①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임명한다.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차장) ① 차장은 <u>10년</u> 이상	제7조(차장) ① ----- <u>7년</u> ----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	-----
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	-----
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제8조(수사처검사) ① -----
<u>7년</u>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 <u>3년</u> -----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	-----
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	-----.
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	-----
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공수처법 제8조²⁾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임. 그런데 공수처 최초 출범 당시

-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검사로 임용되었던 1기 검사 13명 중 11명은 임기만료 전 퇴직하였고, 2명 중 1명은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 연임에 실패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1기 검사 13명 중 1명만이 연임하여 연임 비율은 7.7%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재직 중인 검사의 재직기간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3년 이상 재직자 수는 1명이고, 2년 이상 재직자 수도 도합 6명으로 공수처 출범(2021년 1월 21일) 후 3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검사 중 2년 이상 재직자 비율은 30% 정도로 나타났음.

<수사처검사의 재직기간별 인원수>

(단위: 명)

구분	0 ~ 1년	1 ~ 2년	2 ~ 3년	3년 이상	합계
검사	8	6	5	1	2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최근 3년간 수사처검사의 채용·퇴직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검사	채용인원	21	3	10	0	34
	퇴직인원	0	5	7	4	16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와 같이 수사처검사의 퇴직률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공수처는 2024년 12월 현재 검사채용 절차를 진행중³⁾이나, 수사처검사의 자격요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년 하반기 공수처 검사 채용 보도자료”, 2024. 10. 23.

건이 검사 대비 엄격함에 따라 우수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업무의 연속성 저해와 전문성 약화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음.⁴⁾⁵⁾

개정안에 따라 공수처 처·차장 및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을 10년(처장), 7년(차장), 3년(수사처검사)으로 각각 완화할 경우, 공수처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조직의 안정성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고도의 수사 전문성 및 경험이 요구되므로, 그 자격요건 완화가 단기적으로 공수처의 수사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처·차장 자격요건의 경우 공수처는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 및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경력을 요구한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검찰총장의 임명자격은 공수처 처장과 동일하게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직위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4) 경향신문, “공수처 사건 쌓이는데…검사 결원 채우는 데만 ‘최소 3개월’”, 2024. 6. 16.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6161431001>

5) 검사는 자격요건으로 변호사의 자격만을 규정함.

「검찰청법」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상 검사는 공수처 차장과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경력을 규정하였음.⁶⁾

또한, 수사처검사와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보는 7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⁷⁾을 요구함.

개정안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처검사의 경우 변호사자격 보유 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공수처가 젊고 다양한 수사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큰 상황이며, 개정안과 같이 최소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 난이도·책임도 등에 따라 가중된 경력 요건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유연한 인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처·차장의 경우 법조경력 요건 완화가 공수처 수사역량에 미

6)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28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7)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임명과 권한)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공수처의 수사대상 및 검찰 견제라는 설립 취지,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차관급 기관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점, 차장 등의 공석 기간이 길어졌던 이유를 높은 법조경력 요건에서만 찾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63